

# 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기본소득  
특별호 4

2020. 9

## 기본소득과 빈곤층

연일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기본소득이 소개된 바 있지만 체계적인 내용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복지이슈 FOCUS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주 간격으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발간일정 〉

- 1호(7.13).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2호(7.30). 기본소득의 다양한 자원들과 의미(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 3호(8.20). 기본소득과 현재 복지정책의 관계(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 4호(9.10). 기본소득과 빈곤층(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 5호(9.28). 기본소득과 노인(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6호(9.28). 기본소득과 장애인(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집필**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교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livevil@catholic.ac.kr)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37

Fax: 031-898-5935

-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와 기본소득의 관계임
- 공공부조제도는 ①수급자격을 위한 다양한 조건부과가 인권을 침해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②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환산하여 생계급여 삭감이나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이는 자활의지 약화, 빈곤의 덫으로 이어짐 ③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공공부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급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예산범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1인당 받게 되는 기본소득 금액이 낮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함
  - 기본소득은 자연적이고 천부적 권리에 의한 것으로 빈곤층에게 정의롭다는 주장이 있음
  - 기본소득은 재분배의 역설을 고려할 때, 덧셈의 복지정치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더 빠르게 개선시킨다는 주장도 있음
-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해 기존에 2가지 방식이 제안되었고, 추가적으로 1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함
  - ① 생계급여와 기본소득이 모두 소득보전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기초보장법상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② 의료·주거·교육 급여는 비용보전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기초보장법상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
  - ③ 적정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중위소득 50%(2020년 기준 약 88만원)로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생계급여를 이 수준까지 인상하며, 첫 번째 원칙인 기본소득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덧셈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빈곤층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1차적 소득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2차적 소득안전망으로서 소득보험개혁, 의료,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I 들어가며

###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당시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음

○ 중세 시대 자선 중심의 빈곤구제 방식은 16세기에 들어와 빈민법(poor law)이라는 공공부조로 제도화되었는데, 빈곤정책 아이디어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년)에서 등장하며, Vives의 『빈민구호론』에서 현대적 형태의 공공부조가 최초로 정식화되었음

- “사람이 음식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훔치는 것뿐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벌도 도둑질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도둑질을 사형이라는 끔찍한 벌로 다스리는 대신, 모든 이에게 일정한 생계수단을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Moor, 1516; van Parijs & Vanderborght, 2018:134 재인용)”

- Vives(1526)는 ‘가구의 경제상황, 빈민의 일할 의지’를 고려하는 매우 강력한 조건부 공공부조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금대신 현물을 선호하고, 모든 개인은 우선적으로 각자의 노동을 통해서 빵을 얻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Vives, 1526; van Parijs & Vanderborght, 2018:135 재인용)

○ 공공부조의 아이디어 논의 당시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일정한 생계수단을 공급’해준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기원으로도 소개되고 있음

### ■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빈곤층에게 유리한지, 기본소득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관계에 관한 이슈는 한국복지국가의 재구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적 복지국가론을 넘어,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재구성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빈곤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기본소득이 빈곤층에 유리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 II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 ■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함

- Eardely, et al.(1996)은 공공부조를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총칭’으로 정의함
  -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는 ①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인구 집단에게 현금급여 중심의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
  - ② 실업자나 한부모 가족, 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공공부조
  - ③ 공공부조 급여에 선택적이고 보충적으로 연계되는 연계부조로 구분됨(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235-236)
- Korpi와 Palme(1998)는 ‘재분배의 역설론’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이 제한적인 북유럽 국가에 비해, 공공부조의 역할이 지배적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빈곤율 및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보편주의적 사회수당, 포괄적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조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가 소득보장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
  - 공공부조제도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시민들을 수급자와 납세자로 구분하고 있어 강한 이중적 계층구조가 강화됨. 수급자와 납세자를 연대의 틀이 아닌, 지배와 감시의 틀에 포섭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전체 크기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Korpi와 Palme의 주장에 의거해서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 포섭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복지재정의 전체 크기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빈곤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음

- 첫 번째 한계는 수급자격을 위한 다양한 조건 부과가 인권을 침해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임(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236; 박정훈, 2020)
  - 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취급받거나,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의심받음으로써 수급자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복지권을 누리기가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일반질환은 2개월, 정신질환은 3개월의 진료기록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판정함
  - 근로능력이 있다고 의심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며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함
  - 결국, 이러한 엄격한 자격판정 과정은 인권을 침해하고 스티그마를 조장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이어짐
- 둘째, 부수적인 소득과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환산하여 생계급여 삭감이나 수급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수급자 가구 및 가구원의 자활의지가 약화되고 이는 다시 빈곤의 덫으로 이어짐(박정훈, 2020; Atkinson, 1996)
  -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소득 공제 30%를 제외한 소득금액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수급자 및 수급자 가구 가구원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함
  - 수급자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저축을 할 경우,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월 6.26%는 소득으로 환산되고, 자동차나 집 등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셋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음. 20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1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허선, 2018)

-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사회정책을 전진시키기 보다는 후퇴시킨다는 평가(Atkinson, 1996)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Ⅳ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무엇이 빈곤층에 유리한가

### ■ 기본소득이 빈곤층에게 불리하다는 주장

- 기본소득 비판론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양재진, 2020; 최한수, 2020)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 지출을 더하면 73.4조원인데,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월 11만 7천원 수준임
  - 2년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1인당 5만원도 안된다고 주장함
  - 따라서 생계급여로 월 52만원을 받는 1인 빈곤가구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임
  -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전제 즉, 예산제약론을 전제한 것임
- 그러나 기존의 복지를 가시적으로 줄이는 복지정치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Pierson(1996)의 복지축소 정치론에서 설명되어왔음
  - 기존의 생계급여를 없애고, 생계급여 수준보다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복지축소의 정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시적인 복지축소의 정치는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지 못함
  - 정치인들은 복지축소와 같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Pierson, 1996). 즉, 어떤 정치인도 현재 1인당 생계급여 52만원을 줄여 기본소득 5만원으로 지급하자는 입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Pierson, 1996)
  - 실제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제’ 제안조차 기존의 여러 소득보장 급여를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존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없애기는커녕, 공공

부조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중위소득 50%인 88만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음

## ■ 기본소득은 자연적이고 천부적 권리에 의한 것으로 빈곤층에게 정의로운 제도라는 주장

- 급여의 자격과 관련해 공공부조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연적이고 천부적 권리에 의한 것임
-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함이 증명되어야만 수급권이 부여되는 반사적 권리(reflective rights)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소득의 권리는 자연적이고 천부적 권리가기 때문에 빈곤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임
- 기본소득에서 제시하는 권리는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배당”의 권리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자산(토지, 햇빛 등), 역사적 공유자산(지식 등), 인공적 공유자산(빅데이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공유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보편적,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되는 권리임(금민, 2020)
- 급여자격과 관련해서 볼 때, 천부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와 스티그마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 기본소득은 덧셈의 복지정치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더 빠르게 개선시킨다는 주장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30만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소득보장 수준은 아래와 같이 상승함

〈표 1〉 생계급여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

구분	현행	현행+30만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인)	52만원	52+30=82만원
생계급여(2인)	90만원	90+30=120만원
생계급여(3인)	116만원	116+30=146만원

-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 재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복지국가는 복지재원의 크기를 늘리기 어렵다는 ‘재분배의 역설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orpi & Palme, 1998)
  - 위 표를 기준으로 볼 때, 3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사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반론이 존재함
  -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재원이 공공부조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함
- 실제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인식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생계급여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였음
  -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최저생계비 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현금급여는 33% 수준까지 하락함(빈곤사회연대, 2013: 10; 허선, 2018)
-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급여가 덧셈의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더 빠르게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정체되었던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 약 142만원에서 242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전체 인구의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를 실현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었음
-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이런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책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고민될 필요는 있음

- 또한 생계급여 산정시 기본소득 급여액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생계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달리할 경우,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소득인정 수준을 결정할지는 복잡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

## IV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 제도를 설계할 경우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는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할 때,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의 단계적 전략은 ①보편성 확대전략 ②충분성 확대전략임(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 ①보편성 확대전략은 현재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포괄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전략임
  - ②충분성 확대전략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부터 도입하고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임
- 두 가지 전략 모두 2020년 기준 1인당 생계급여 52만원 이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존이 필수적임

### ■ 기본소득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설정 방식

- 현재 기본소득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계설정에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고(남찬섭·허선, 2018), 여기에 세 번째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 첫째, 생계급여와 기본소득이 모두 소득보전 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임
  - 소득보전급여를 중복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득보장조치의 과잉일 수 있기 때문에(남찬섭·허선, 2018: 217)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임

- 현재 1인 가구 기준 52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향후 기본소득으로 30만원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비는 22만원이 지급되어 현재와 같은 총 52만원의 소득을 얻게 됨
  - 반면, 기본소득이 60만원 지급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현행 52만원 +8만원의 급여액이 최종소득이 됨
- 둘째, 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임(남찬섭·허선, 2018: 217)
- 이 입장은 생계급여 이외의 의료·주거·교육 급여의 경우는 소득보존 급여라기보다는 비용보전 급여임. 때문에 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이런 경우에는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현행 기준선 이하의 소득일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여전히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됨
- 다만, 생계급여와 기본소득의 관계에서 기본소득을 온전히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원칙이 도출됨
- 기본소득을 100% 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생계급여 수준이 적정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함
  -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기준선이 어느 수준인지는 논의가 필요함
  - 남찬섭·허선(2018: 217)은 현행 기초보장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와 교육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50%)의 중간 어느 지점을 최저소득보장수준으로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에 따라 다음의 세 번째 원칙이 도출됨
- 셋째, 적정 최저소득보장수준을 결정하고, 이 수준까지 생계급여 인상 및 기본소득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임
- 적정 최저소득보장 수준을 중위소득 50%<sup>1)</sup>로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생계급여를 이 수준까지 인상하되 첫 번째 원칙인 기본소득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함
  - 이 경우 중위소득 50%(약 88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경우 현행 생계급여 수급액과 기본소득의 합이 88만원일 때 까지 최저 소득을 보장 받음

1) 이 기준은 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빈곤률 계산 기준임

- 즉, 30만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최고액 527,158원의 수급자 소득은  $527,158+300,000=827,158$ 원이 될 수 있음

## V 결론

### ■ 기본소득은 개혁적 복지국가 혁신론(백승호·이승윤, 2019;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의 핵심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전통적 복지국가 강화론(양재진, 2020)은 기본소득보다 기존의 복지제도 강화를 주장하면서 논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개혁적 복지국가 혁신론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를 모두 대체하는 기획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복지국가 개혁 원칙에서 1차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함
  - 첫째, 욕구 중심의 한국 복지국가에 공유부 배당이라는 권리 기반의 기본소득을 한 층 더 추가함
  - 둘째, 1차적 소득보장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셋째, 2차적 소득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함
  - 넷째,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1차, 2차 소득보장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함

### ■ 이상의 복지국가 개혁 원칙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빈곤층에게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복지수급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배제나 낙인의 문제가 해소되어 빈곤층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임

- 둘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보장은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
- 셋째,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의 생계급여와 기본소득이 공존함. 이때 빈곤층의 소득보장 수준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짐으로써 빈곤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넷째,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비용보전 급여의 경우 기본소득은 소득인정에서 제외됨으로써 현행의 수급자격이 유지 또는 강화됨
- 다섯째, 수급자선정과정의 관료제적 행정업무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업무로 전환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산조사 기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보편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으로 완전히 전환됨으로써, 사회복지관련 행정 담당자들은 수급자 선정이라는 관료제적 행정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즉 수급자 판정을 위한 행정업무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불필요해짐
  - 대신, 복지관련 담당자들은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개선이 기대됨

## 참고문헌

- 금민(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애틀판사.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아카데미.
- 남찬섭·허선(2018).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공적급여 간에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비판사회정책. 59. pp.193-230.
- 백승호(2020). “한국 복지국가 재구성 전략 패키지로써의 기본소득 도입”. 여시재전문가토론회 토론문.
- 백승호·이승윤(2018). “기본소득논쟁 제대로하기. 한국사회정책”. 제25권. 3호. pp.37-71.
- 백승호·이승윤(2019).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정의정책연구소.
- 빈곤사회연대. 2013. “반빈곤 프리즘: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 ①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대로 보기”. 5호.
- 양재진(2020).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경기복지연대 담론회 발표자료.
- 최한수(2020).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박주민 의원실 [포스트코로나 19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토론회 발표집.
- 허선(2018). 저소득계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Eardley, T. et al.(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8. OECD.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2018).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홍기빈 역).
- [김찬휘 TV].<https://www.youtube.com/watch?v=dBrBRpg55IA>. 기본소득 특집 2화 2부. (기본소득이어야 복지대폭확대가 가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BrBRpg55IA>.
- 오마이뉴스(2020.06.23.). “진짜 불쌍한 사람만 지원하자는 사람들에게[전국민고용보험VS기본소득 논쟁은 허구다]. 박정훈.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기본소득 특별호4 2020-(특)-04  
**기본소득과 빈곤층**

---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